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제안

2017. 4.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미국·유럽 등 각국의 보호주의 전면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 축소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로 세대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청년실업률은 9.8%에 달했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삼포세대, 헬조선 등의 자조적인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내 정치 불안으로 사회적 갈등은 최고점에 도달해 있으며, 공동체의 해체마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한계 도달

우리는 전쟁과 민족 분단의 역사를 딛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빈의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고,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이들의 성과에 크게 기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헌신을 배경으로 대기업들이 길을 밝혀온 지금,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권에서 우열을 겨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은 엄연한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극심한 양극화에 직면해 IMF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기구와 세계적 석학들이 고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고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략 수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견인차,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내일을 이끌 유일한 견인차입니다. 근거는 구체적인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자명하게 확인됩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약 6%, 전체 매출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6%, 6.6%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92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의 역사를 일궈 온 중견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내일을 약속하는 한국형 힐든챔피언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은 히든챔피언입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다보스포럼 회장은 재벌이 장악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물고기 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재건의 기수인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前 독일 총리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 기업 발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그러나 우리 중견기업이 처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대내외 위상은 경제적 기여도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어 중견기업을 성장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고, 중견기업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중견기업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못지않게 강합니다. 독자적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이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1%만 돼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선진국을 부러워하고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중견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는 넓은 땅을 제공하고, 커진 몸피에 걸맞은 갑옷을 입혀주어야 마땅합니다. 더 큰 세상에서 자유롭게 질주하는 중견기업의 모습을 키 작은 기업들이 선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재도약 기업에서 해법 찾아야

기업은 살아있는 경제의 엔진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입니다. 현대 경제는 기업 활동 없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업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 전체의 도약을 견인하는 핵심기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 해법은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기업을 옥죄는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규제하되, 기업의 혁신을 가로 막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지 차원 넘어선 진짜 산업정책으로

무엇보다 복지와 산업정책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합리적인 분배구조는 산업정책 전반의 개혁적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9988이라는 왜곡된 구조 아래 수 많은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미봉이자 우리 사회의 눈을 가리는 미망일 뿐입니다. 기업 스스로 성장을 철회하고 안온한 정부 지원의 뜰에 놀러앉기를 선택케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삶의 토대로서 경제 가치의 재인식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모든 것일 수 없지만, 생존의 기본 요소인 경제는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할 토대입니다. 삶의 근원인 가정을 정립시키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서 경제는 국가의 물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저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제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협력과 갈등의 전장이자, 한 사회의 인류사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무기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살 자리는 없습니다.

» 건의배경

1. 한국경제의 현주소	3
2. 중견기업 현황	7

» 차기정부 정책제안

I.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1.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15
2.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16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17
4. 사업자편 및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18
5.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9
6.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 폐지	20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참여 규제완화	21
8. 택배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배증차 규제완화	22
9. 지자체의 인·허가 등 재량권 남용 방지장치 마련	23

II.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27
2.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28
3.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29
4. 기간제근로자 보호기간 확대	30
5.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축소	31
6. 근로시간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할증률 축소	32
7. 뿌리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근로 허용	33

III.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37
2.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38
3.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39
4.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	40
5.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41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합리화	42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43
8.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44
9. 중견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45
10.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46
11.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47
12.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48
13. 홈쇼핑 채널편성 규제완화	49

IV. R&D 및 투자 활성화

1.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 영구화	53
2.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55
3.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감면	56
4.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57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증설 규제완화	58
6. 중소·중견기업연구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60
7. 중소·중견기업연구소 설립시 과밀부담금 면제	61

V.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조성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65
2. 기업승계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66
3. 고용유지 의무조건 완화	67
4. 증여에 의한 기업승계시 공제한도 확대	68
5. 공익법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69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도입	70

VII. 공정거래질서 확립

1.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73
2. 발주기관 규책시 공사기간연장 추가비용 지급	74
3.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75
4.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참여제한 합리화	76
5.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기업 세제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77

VIII.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 사외이사 선임 자율화	81
2. 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행사제한 폐지	82
3.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83
4.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85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신고 중복규제 완화	86

VIII. 국민 부담 완화

1.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를 통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89
2.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휴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90
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확대	91
4.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폐지	92

건의배경

1

한국경제의 현주소

- (성장잠재력 하락)**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대, 2000년대 4%대, 2010년대 2%대로 점진적으로 하락
 - 향후 투자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생산성 둔화와 맞물릴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
 - * KDI 잠재성장률 전망 2010년대 3.6% → 2020년대 2.7% → 2030년대 1.9%
-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저출산·고령화 심화는 생산가능인구('16년 3,704만명→'25년 3,490만명) 감소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심화 예상
 -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세대 간 갈등 우려
 - *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비중 7%),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 (청년실업 증가)** '16년 청년고용률은 42.3%이며, 실업률은 9.8%로 최고 수준으로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

<15~29세 청년고용 동향>

(단위 : %, 천명)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산가능인구	10,141	9,843	9,822	9,705	9,589	9,517	9,548	9,503	9,486	9,428
경제활동인구	4,990	4,634	4,398	4,254	4,199	4,156	4,124	4,255	4,335	4,420
취업자	4,578	4,270	4,084	3,914	3,879	3,843	3,793	3,870	3,938	3,985
실업자	412	364	315	340	320	313	331	385	397	435
실업률	8.3	7.9	7.2	8	7.6	7.5	8	9	9.2	9.8
고용률	45.1	43.4	41.6	40.3	40.5	40.4	39.7	40.7	41.5	42.3
경제활동참가율	49.2	47.1	44.8	43.8	43.8	43.7	43.2	44.8	45.7	46.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경쟁력 약화) 글로벌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

-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후발 신흥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로 인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12년→'14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기술수준(%)	77.8	78.4	100.0	100.0	94.5	95.5	93.4	93.1	67.0	69.7
기술격차(년)	4.7	4.4	0.0	0.0	1.4	1.1	1.6	1.6	6.6	5.8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기술수준평가」, '15.4월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10년 3위, '13년 5위, '18년 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Deloitte, '13년)

* 중 국 : '10년 3위→'13년 1위→'18년 1위, 인 도 : '10년 2위→'13년 4위→'18년 2위,
브라질 : '10년 5위→'13년 8위→'18년 4위, 독 일 : '10년 8위→'13년 2위→'18년 4위,
미 국 : '10년 4위→'13년 3위→'18년 5위

 (대외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으로 불확실성 증가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IMF) : ('00년~'07년 평균) 4.5%, ('12년~'16년 평균) 3.3%

-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 우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반 미흡)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
 -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수준*은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
* 한국 기술수준(미국=100) : 인공지능 70.5, IoT 80.9, 빅데이터 77.9(로봇신문, '17.4.3)
 -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139개 국가 중 25위였으며, 부문별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83위, 법률시스템 62위, 교육수준 23위, 인프라 20위로 나타남(UBS, '16.1월)
* WEF 보고서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2015년 138개국 중 26위이나 부문별로 제도(institutions) 63위, 노동시장 효율성 77위로 하위권으로 평가(WEF, '17년)
 - '13년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남(OECD, '16년)
- (내수와 수출 부조화) 내수는 감소추세인 반면 수출은 증가추세로 내수와 수출의 부조화 발생
 - GDP 대비 내수비중은 '80년 62.2%에서 '15년 49.5%로 감소한 반면, 수출비중은 28.5%에서 45.9%로 증가(한국은행)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90년대 하반기 이후 역전

<실질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1~'15
경제성장 기여도	실질경제성장률	9.4	10.5	8.4	5.6	4.7	4.1
	민간소비	4.4	4.8	4.2	2.1	2.0	1.6
	정부소비	0.5	0.9	0.5	0.4	0.6	0.8
	투자	2.9	5.5	3.8	0.7	1.3	0.9
	수출	2.7	4.2	3.6	4.6	3.5	3.6
	수입	1.0	5.0	3.8	2.2	2.6	2.2

*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의미

*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사회갈등 지속) 압축성장과 민주화로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이해집단간 사회갈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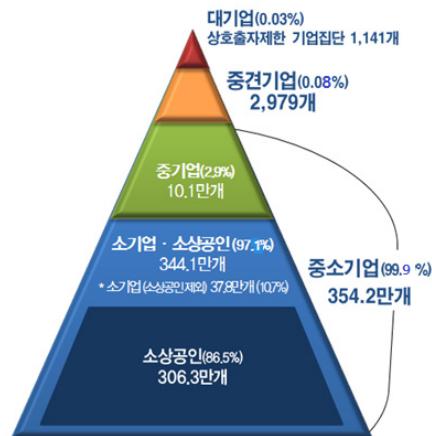
- 갈등은 지역·노사·이념·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낮고,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은 것도 갈등해결의 걸림돌로 작용
 - * 세계 138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정부 정책투명성 부문은 115위, 정치인 신뢰 부문은 96위를 기록(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eport, '16년)

2

중견기업 현황

(경제적 기여도) 중견기업은 0.08%에 불과하나, 우리 경제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14년 기준 전체 사업체 354.5만개 중 중견기업은 2,979개로 0.08%에 불과하나 고용의 5.6%(89.9만명), 수출의 15.7% (901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중견기업 수는 '1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15년 3,061개로 전년 (2,979개) 대비 2.8% 증가
- 총 고용도 증가추세로 '15년 97.5만명으로 전년(85.7만명) 대비 13.8% 증가
- 수출액도 증가추세로 '15년 704.1억달러로 전년(634.6억달러) 대비 11.0% 증가
- R&D 집약도는 '10년 0.9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5년에는 1.15%로 증가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견기업 수(개)	2,187	2,743	3,436	3,846	2,979	3,061
근로자수(만명)	88.9	93.4	106.6	116.1	85.7	97.5
수출액(억불)	605.6	658.6	728.3	888.9	634.6	704.1
매출액(조원)	391.1	428.3	595.1	629.4	483.6	505.3
R&D집약도(%)	0.98	1.13	1.08	0.88	1.05	1.15

* '14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으로 개편됨에 따라 700여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

(소규모 중견기업 다수) 중견기업의 85.4%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55.5%가 중소기업 규모에 근접한 1천억원 미만 기업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15년말 기준)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 2천억원	2천억원 ~ 3천억원	3천억원 ~ 5천억원	5천억원 ~ 1조원	1조원 이상
1,699 (55.5%)	580 (19.0%)	335 (10.9%)	234 (7.6%)	150 (4.9%)	63 (2.1%)

- (성장부담 및 성장걸림돌 존재) 중견기업법 시행으로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성장에 따른 부담과 성장걸림돌 여전

-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분석결과,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확연한 성장을 격차 존재(중소기업연구원, '14년)

<중소→중견기업 성장부담 분석결과>

		'07~'09 (A)	'10~'12 (B)	B-A
평균 매출 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16.73%	5.93%	△ 10.80%p
	계속 중소기업	8.01%	10.25%	2.24%p
평균 영업 이익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35.31%	-10.27%	△45.58%p
	계속 중소기업	10.40%	2.20%	△8.20%p

- 성장사다리 구축정책 취지에 따라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성장걸림돌 존재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

구 분	지원 배제							규 제 신규적용	합 계
	조세	금융	R&D	인력	판로	기타	소계		
'13년 조사	21	7	10	7	10	8	63	20	83
'15년 확인	18	7	9	7	10	6	57	16	73

* 자료 : 중소기업청

- (혁신역량 부족) 우수인력 확보 애로 및 R&D 투자 감소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 R&D 전문인력 부족률은 9.3%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저임금, 빈번한 이직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중견기업연구원, '16년)

- 중견기업의 R&D 비중 또한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에 한계
 - * 평균 R&D 비중 : '11년 1.13% → '12년 1.08% → '13년 0.88% → '14년 1.05% → '15년 1.15%

자기정부 정책제안

I.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1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현 황)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14년부터 시범운영 중

* '14.7월부터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15년 전면도입 계획이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 (문제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63위로 낮은 수준 (WEF, '17년)이며, 상품시장규제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엄격 (OECD, '16년)

-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신설·강화 규제의 증가로 규제 총 수는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

<중앙정부 등록규제 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2,867건	13,386건	14,049건	14,857건	15,265건	14,928건

* 자료 : 2014 규제개혁백서

- 반면,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비용총량제, 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Red Tape Reduction Act 등 기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

* 영국은 '11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One-in, Two-out)를 실시해 상당한 규제비용을 절감 ('11년~'12년 8.36억파운드, '13년~'14.6월 3.3억파운드)

- (견의안) 규제 신설·강화 억제 및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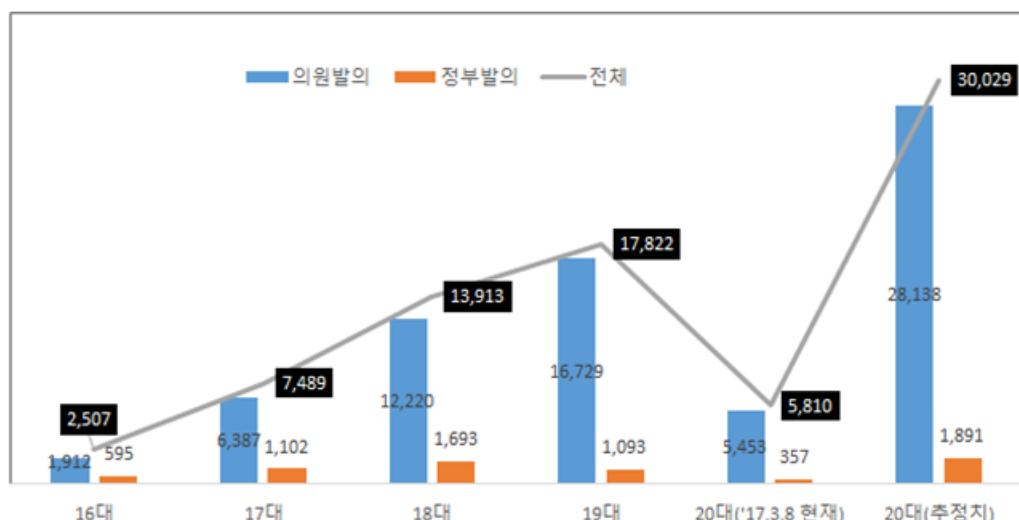
2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현 황)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발의 법안보다 의원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역대 국회 법안발의는 16대 2,507건에서 19대 17,822건으로 급증했으며, 20대는 약 3만건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추정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 현황>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추정치는 월평균 입법 발의건수를 계산해 4년간 합산

- (문제점) 규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정부발의와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이 과정이 없어 우회입법 창구로 남용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 (견의안) 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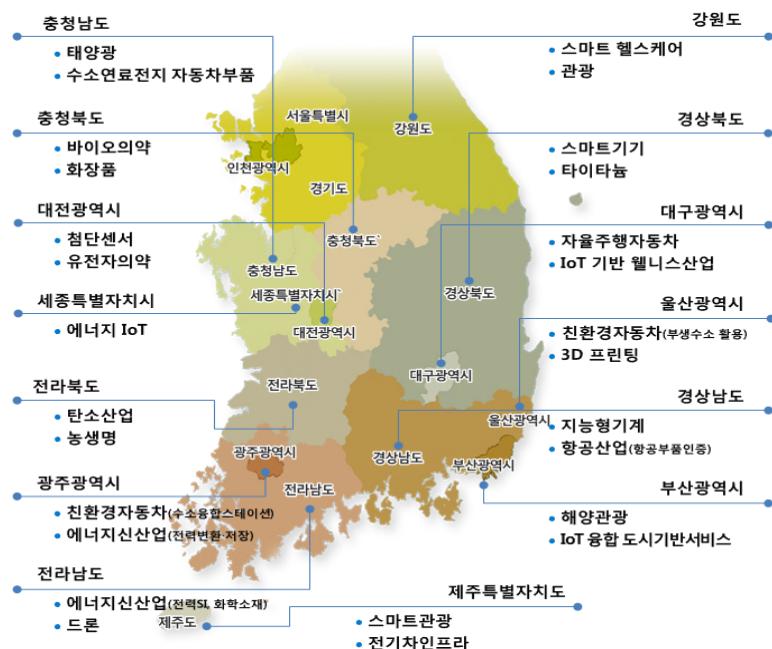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15.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
 -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며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 부여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20년까지 약 21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국경제연구원, '16년)
 - '16.5월말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나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음

(건의안)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총 27개)>



4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 (현 황)**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통해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 중
- (문제점)**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을 추진하는데 한계
 -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이용 가능하나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국내 정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사업재편 승인 현황>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계
승인 건수	3건	4건	3건	5건	4건	5건	24건

* 사업재편 승인 기업 24개사 중 중소기업 15개사, 중견기업 4개사, 대기업 5개사

* 자료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견의안)**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5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은 총 부가가치의 57.4%(12년 기준) 고용의 73.3%(1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낙후

- 서비스산업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3%로 OECD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중은 45.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도 OECD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큼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지표 비교('13년)>

(단위 : %, 억 달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명목GDP 비중	80.1	79.2	78.5	68.4	74.4	72.6	59.3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 비중	78.8	81.4	87.8	72.7	104.0	89.3	45.6

* 자료 : 국제무역원,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Trade Brief No. 28, '15.4.27

- 그 원인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진입장벽, 사업활동제한 등 규제가 많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
 - 등록규제 15,269건('13년 기준) 중 제조업은 1,073건인 반면 서비스 산업은 4,336건이며, 주된 규제*는 서비스산업이 3,601건으로 제조업 (338건)의 10.6배 수준

*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구분하고,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 이행을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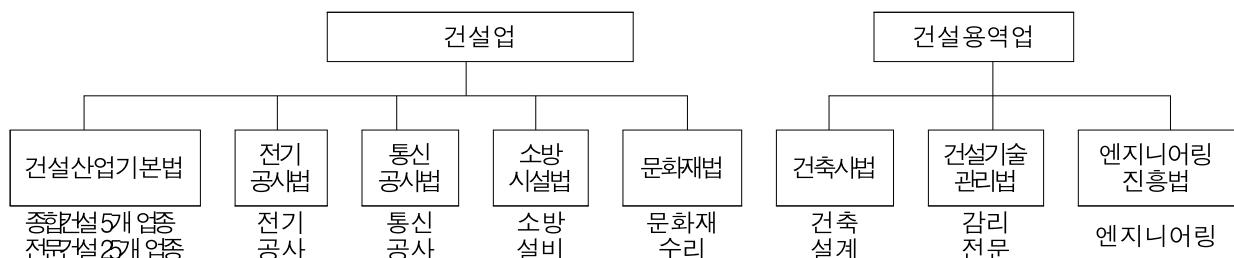
□ (견의안) 경제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

6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 폐지

- (현 황)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공사 등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각각의 법에 따라 업종 구분

<건설 관련 공사업 규제 체계>



- (문제점) 업종별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칸막이식 규제로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효율적 수행 곤란

- 종합건설업자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번에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 진행에 비효율 발생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산업화 추세에 배치되며 특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의무화로 상호적응 및 연계가 곤란
 - 이는 시공효율 저하로 이어져 첨단시설 건설 장애요인으로 작용
 - * 분리발주시 6~8% 비용 상승, 공기 2배 증가, 시공품질 향상 없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년)
-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업무와 감리 등 시공관리에 관한 규제도 서로 다른 법률에서 소관부처별로 각각 진행되면서 공사 수행상 비효율 초래

- (전의안)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업 등 건설관련 공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여 겸업 허용 및 분리발주 폐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참여 규제완화

- **(현 황)**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업체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제
- **(문제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수행에 적정성을 갖춘 기업임에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설기술 발전이라는 법 취지와 상충되며, 이는 한국만의 유일한 규제로 해외진출 장벽으로 작용
 - 건축설계업과 건축사업관리업으로 법인을 분리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법인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 및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유발
- **(전의안)** 해당 건축설계용역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8

택배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배증차 규제완화

- (현황) 200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화물 자동차의 신규 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문제점)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쇼핑 등의 성장*으로 국내 택배 물량이 매년 약 13%씩 증가함에 따라 택배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진입규제로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온라인 쇼핑 : '01년 3조 3,471억원→'15년 53조 8,883억원(연평균 22.0% 성장)
 모바일 쇼핑 : '13년 6조 5,596억원→'15년 24조 4,645억원(3년간 연평균 93.1% 성장)
 (출처 : 통계청, “통계로 본 온라인 쇼핑 20년”, '16.6.16 보도자료)

<국내 택배 물량 성장 추이>

(단위: 억 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량	6.6	8.0	8.9	10.8	12.0	13.0	14.1	15.1	16.8	18.2
증가율	24.5	21.2	11.3	21.3	11.1	8.3	8.5	7.1	11.3	8.3

* 자료: Deloitte, “국내 택배시장의 현황 및 대응방안”, '16.1월(www2.deloitte.com)

- 차량부족에 따라 배송시간이 지연되고,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음

- (건의안) 택배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업에서 제외하고 택배업에 대한 증차규제 폐지

9

지자체의 인·허가 등 재량권 남용 방지장치 마련

- (현황)** 지자체가 건축물의 인·허가 및 용적률 제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건축물 인·허가 및 용적률 제한 등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기부채납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
 - 정부는 지자체에 인·허가를 100일 이내에 마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A사는 13차례의 건축심의 부결 등으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건의안)** 기부채납을 강요하거나 건축심의를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방지장치 마련

II.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 (현황) 매년 노사분규로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10년간 평균 102.6건의 노사분규와 678천일의 근로손실일수 발생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노사분규 발생건수	138	115	108	121	86	65	105	72	111	105	102.6
근로손실 일수(천일)	1,201	536	809	627	511	429	933	638	651	447	678

* 자료 : 통계청

- (문제점) 노조 조직률은 10.2%('15년 기준)에 불과하나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노조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
- '01년~'13년까지 국내 자동차업계의 파업에 따른 누적 매출 손실 규모는 19조 7,070억 원에 달함(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 협력사로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고스란히 부담
 - 대체근로 금지는 파업발생 확률도 증가시키고 파업기간도 길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경제연구원, '09년)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

미국	일시적 외부인력으로 대체, 복귀 거절 시 영구적으로 대체
프랑스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 도급
독일	신규채용, (하)도급으로 대체(파견근로자 대체 금지)
일본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근로자로 대체

* 자료 : 바른사회시민회의, “일자리 만드는 유연한 노동시장”, '17.2.23

- (전의안) 노조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근로제 도입

2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 (현 황)** 정년연장 의무화는 '16.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17.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 (문제점)**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매년 7.5%씩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 가중(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공동심포지엄, '14.1.22)
 -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를 구하도록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으나,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협의시 노사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노사갈등 발생 우려
 -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지침 :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 要
- (전의안)**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법제화 필요
 - 임금피크제 도입시 5년간 26조원이 절감되어 신규인력 31만명 채용 가능(한국경제연구원, '15년)

3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 (현황)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문제점)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정성 해석을 두고 노사 갈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 발생
 - 대법원 판결은 최소 근무일요건 또는 재직요건 부가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요건 등 부가시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
 - * 일본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법률에 명시
- (견의안)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4

기간제근로자 보호기간 확대

- (현 황)**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문제점)** 「기간제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

<기간제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531	2,365	2,815	2,494	2,668	2,714	2,761	2,749	2,625	2,810

* 자료 : 통계청

- 사용기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건의안)**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5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축소

- (현황) 노사정위원회(15.9.15)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합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대타협 합의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법상 1주=7일)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함
 - 기업규모별 단계시행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1년마다 확대)
 - 1단계 : 1,000인 이상, 2단계 : 300~999인, 3단계 : 100~299인, 4단계 : 5~99인
 -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4년간(이후 지속여부 재검토)
 - 국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는 입법* 추진 중
 - *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법상 1주=7일)
기업규모별 단계적용(300인 이상 2년 유예, 300인 미만 4년 유예)
- (문제점) 근로시간단축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생산 차질과 납기차질을 초래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가중 우려
- * 근로시간단축시 발생 추가비용 : 12조 3천억원(한국경제연구원, '15년)
 -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최대 2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가 임금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보전을 요구할 경우 노사갈등 우려
- (전의안) 노사정 합의(15.9.15)대로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및 특별 연장근로 4년간 주 8시간 허용

6

근로시간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할증률 축소

- (현 황)**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시간단축과 초과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문제점)** 법이 개정될 경우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
 - * 근로시간단축시 발생 추가비용 12조 3천억원(한국경제연구원, '15년)
 - 초과근로 할증률이 ILO,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고, 한국만 주휴를 유급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필요
 - * [ILO 권고기준] 25%, [독일] 별도규정 없으며, 단체협약으로 결정, [일본] 25%(월 60시간 초과시 50%), 야간근로 25%, 휴일근로 35%(중복할증 없음), [프랑스] 25%(8시간 초과 50%), 단체협약에서 달리 결정 가능(10% 이상), [미국·유럽] 대부분 25% 수준이며 직종별로 차등 적용
- (건의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

7

뿌리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근로 허용

- (현황)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Positive 방식으로 32개 업종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 (문제점) 뿌리산업*은 제조공정상 핵심공정이며, 주력산업의 원천 기술로 활용됨에도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기존 직원의 고령화 심화로 기술 단절 우려
 - * 뿌리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핵심공정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타격 우려
 - 중소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생산을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력난 가중
- (전의안) 뿌리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 근로 허용

III.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현 황) 중소기업정책은 60년대 초 법적 근거를 갖추고 7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호·원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옴
 - 수십 년 간 진입규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비중은 99.9%에 이르고 중견·대기업 비중은 0.1%에 불과
-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입규제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유발
 - 보호·원조정책은 기득권화되어 축소하기가 곤란하였으며, 경쟁력 강화 정책은 정책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전분석과 사후평가 기준 부재(중소기업청, '13년)
 -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정책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복지적 지원책을 별도로 논의하되 기존정책은 생산적 지원정책 기준으로 재정비 필요(KDI, '13년)
- (전의안) 중소기업 정책 지원대상을 경제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은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반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의 생산적 지원 정책 추진

2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 (현 황)**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 중
- (문제점)** 중견기업정책은 초기중견기업의 성장부담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기존 중견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
 - 중견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연장선으로 지원대상을 대부분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제한
 - * 중견기업법 1차 개정시 R&D,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 10개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으나, 그 중 7개의 지원정책의 대상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제한
 - 중견기업 등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없음
 - * 실제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World Class 300 사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신청가능하나, 선정기업의 60%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40%에 불과(WC300 전체 231개 중 중소 137개, 중견 94개)
- (전의안)** 기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수출, 해외진출, 지식재산권 등 지원정책 대상을 전체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3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 (현황)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중견기업 구간 설정을 통해 세제지원 중이며, 대부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중견기업 범위	세제지원 항목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보세구역 특례,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고용창출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R&D설비투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술취득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청년고용증대세제
매출액 1천5백억원 미만	신규상장 투자세액공제

- (문제점) 중견기업으로 성장 이후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혜택 단절

* 회귀검토요인 : 조세혜택 50.0%, 금융지원 24.8%, 판로규제 15.0%, 기술개발지원 5.6% 순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건의안)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4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중견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진출의 방안으로 M&A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한 편이나, 중견기업 M&A시장에 대한 거래건수, 거래규모 등 정확한 거래실적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자료가 全無한 상황
 - 또한, 소규모 자문인(M&A 부띠크)을 통한 거래, 비조직적·비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 정보의 비대칭성, 수수료 문화 등의 이유로 낮은 거래 체결률을 보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M&A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견기업 M&A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견련 M&A지원센터*가 중견기업 M&A의 HUB로써 매도·매수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자문·컨설팅 활동 등을 수행해야 함
 - * 「중견기업특별법」 및 「벤처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14년)된 M&A 전문기관
- (전의안) 중견기업 M&A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중견련 M&A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필요

5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 (현 황)**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당초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이었으나,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제도를 운영
 - * 적합업종 현황(‘16.12월) : 재지정 74개, 시장감시 10개, 상생협약 27개
- (문제점)**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도 규제를 받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
 -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도 적합업종으로 규제를 받아 사업 확장이 제한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발생
 - * 과거 적합업종과 유사한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저해, 외국기업과 역차별문제, 중소기업경쟁력 약화, 경제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2006년 폐지
- (건의안)**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거나, 적합업종 품목 선정시 중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상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명확화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합리화

- (현 황)** 중소기업 구매촉진, 판로개척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제도를 운영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현황 : '10년 195개 → '13년 202개 → '16년 204개
- (문제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보다는 공공시장에만 안주하여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하거나 경쟁력 약화 초래
 - 중소기업 적합업종(3년+3년)과 달리 중기간 경쟁제품은 지정 횟수 제한이 없어 영구 지정 가능
 -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및 조정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 발생
- (건의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횟수를 제한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도를 운영하게 하여 공정성 제고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현 황)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용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 중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 :

[품목지정] '16년 123개, [대상공사] 종합 2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이상

- (문제점) 시설물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머니위크, '14.8.26), 2.8~7.6%의 공사비 증가(대한건설협회, '16년)에 따른 정부 재정낭비, 자재 적기 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중소기업 적합업종(3년+3년)과 달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횟수 제한이 없어 영구 지정 가능
-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지정추천 및 조정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 발생

- (건의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횟수를 제한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도를 운영하게 하여 공정성 제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대상공사 축소 및 종합적인 공사관리 역량이 필요한 턴키방식 공사 적용제외
-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제외(레미콘, 골재, 석재, 창, 가드레일 등)

8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제외
- (문제점)** 중견기업도 인력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은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 특히 뿌리산업은 제조공정 과정상 핵심이고 주력산업의 원천기술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짧은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기존 직원의 고령화 심화로 기술 단절 우려
 - 중견기업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핵심공정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타격 우려
- * 뿌리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14년 기준 전체 27,141개 중 중견기업 125개)
- (전의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퀘터를 확대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9

중견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 (현 황)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시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문제점) 취업난에도 중견기업의 64.5%가 중소기업처럼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개 중 8개 중견기업이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년)
- 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인상을 유도해 청년이 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15년 말 기준)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 2천억원	2천억원 ~ 3천억원	3천억원 ~ 5천억원	5천억원 ~ 1조원	1조원 이상
1,699 (55.5%)	580 (19.0%)	335 (10.9%)	234 (7.6%)	150 (4.9%)	63 (2.1%)

- (건의안)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 황)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세제지원은 중소기업만 지원(납입금 손금산입, 근로자 소득세감면)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제점) 중견기업도 이직이 많아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제지원은 배제되어 있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6년말 기준 6,899개사, 17,194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중견기업 근로자는 3개사, 95명에 불과(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7.2월)

- 세제지원 확대시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및 인력유출에 따른 경영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 (건의안) 중견기업에 대해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11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 향)** 초기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 성장 3년 이내) 중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
- (문제점)** 매출채권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관리·부도위험방지·경영 안정효과 등의 장점이 있으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지 3년을 초과하거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은 가입대상이 아님
 - * 민간(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액 250억원 기업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나, 외상으로 체결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연간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
- (건의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성장연차나 매출액 규모에 제한 없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12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황)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해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현황>

지원 규모		기업분담금	지원 한도
특허(PCT)	300만원 이내		
특허(개별국)	700만원 이내	중기업 : 30%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상 표	250만원 이내	소기업, 개인발명가 : 10%	(단, 1,400백만원 한도)
디자인	280만원 이내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출처 : 특허청, 「2016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16.3월

- (문제점) 국내기업 보호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가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은 출원심사 및 유지비용 부담으로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업규모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심사 및 유지비용>

(단위 : 만원)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기업
출원·심사	2,988	10,017	4,501	1,536	2,012
유지	2,781	2,726	5,608	3,093	891
합계	5,769	12,743	10,109	4,629	2,903

* 출처 : 특허청,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15.12월

- (전의안) 지식재산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13

홈쇼핑 채널편성 규제완화

- **(현 황)**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채널 편성 및 프라임타임에 일정비율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TV 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기준”을 시행(‘13.1.1) 중이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
 - * 일반홈쇼핑 : GS, CJ, 롯데, 현대
- **(문제점)** ’15년 제7홈쇼핑인 공영홈쇼핑 출범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2개사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일반홈쇼핑의 방송편성 및 제품편성비율 등을 규제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판로 위축
 -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홈쇼핑사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중견기업 제품을 방송 편성에서 제외
- **(전의안)** 중소기업 전용 외 일반홈쇼핑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채널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제품도 중소기업 제품 범위에 포함

IV. R&D 및 투자 활성화

1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 영구화

- (현 황) R&D 및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을 두고 있음

일몰시기	R&D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제도
2017.12.31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투자, 고용창출투자
2018.12.3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2019.12.3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 (문제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및 투자가 중요함에도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세제지원 축소

- 선진국 제조업의 부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후발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10년 3위, '16년 5위, 향후 5년 내 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Deloitte, '16년)

* 한국 : '10년 3위 → '16년 5위 → 향후 5년 내 6위

일본 : '10년 10위 → '16년 4위 → 향후 5년 내 4위

인도 : '16년 11위 → 향후 5년 내 5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12년→'14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12년	'14년
기술수준(%)	77.8	78.4	100.0	100.0	94.5	95.5	93.4	93.1	67.0	69.7
기술격차(년)	4.7	4.4	0.0	0.0	1.4	1.1	1.6	1.6	6.6	5.8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기술수준평가」, '15.4월

- R&D 및 투자 확대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
 - 미국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세액공제 영구화를 추진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년)
- (건의안)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의 영구화

2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 (현 황) 중소기업에 한해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연구관련 분야 전공자나 해당 연구 분야 1년 이상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련 분야 전공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3년제 전문대 졸업은 1년 이상) - 맞춤형·특성화고 졸업자로 연구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자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련 기술·기능 기술기사 이상 기술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련 기술·기능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 연구관련 기술·기능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자가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문제점) 기존 중견기업도 연구개발인력 확보 및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을 완화

- *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인력 이탈 애로 호소(산업기술진흥원, '15년)
- 향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매출액 5천억원 미만까지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 받지만, 기존 중견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전의안)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을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완화

3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감면

- (현 황)** 중소·벤처기업 R&D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종사자에 한해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문제점)**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갖은 이직, 숙련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4년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인력부족률 및 미충원률은 각각 3.1%, 10.6%로 대기업의 0.6%, 5.0%보다 높음(KISTEP, '15년)
 -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직 이직률은 1년 이내 12.1%, 3년 이내 19.0%, 5년 이내 10.2%로 조사(산업기술진흥원, '15년)
- (건의안)** 중견기업 연구종사자에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감면

4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 (현황) 수도권에서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은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결정
- (문제점) 공장총량제가 지역별로 할당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장총량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15년~'17년)>

(단위 : 천 m²)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평택
총허용량	5,778	33	962	4,783	130
산단이외 공업지역	2,085	23	866	1,196	80
개별입지	3,693	10	96	3,587	5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2호

- 공장총량제는 공장의 신·증설을 가로막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저해
 - * '09년 이후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투자 포기, 투자 보류, 투자 지연, 지방 이전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3조 3,329억원이며, 고용 손실은 12,059명(한국경제연구원, '15년)

- (견의안)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증설 규제완화

- (현 황)** 중견기업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음
- (문제점)**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 중견기업의 투자지연 및 포기, 해외공장 설립 사례 속출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가능(첨부 표 참조)
* 수도권 공장 등록 중견기업은 511개사가 828개 공장 등록('15.10월말 기준)
 -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공장 신설로 규제하여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 (전의안)**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 「산집법령」 상 수도권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공장설립 규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산업 단지	공장 신·증설	좌동	공장 신·증설	좌동	공업·기타지역 허용행위 (면적제한 없음)	면적제한
공업 지역	도시형공장 신·증설	x	제한없음	과밀·자연⇒성장권역 이전 첨단업종 기존공장증설 기타지역 허용행위	3천 m ² 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x
	기존공장 증설	3천 m ² 이내, 첨단업종 200%이내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x
	기존공장 부지 내 증설	좌동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x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 지역	현지근린공장·건축자재업종의 신·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1천 m ² 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100%이내	제한없음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 공장 신·증설(5천 m ² 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200%이내 증설 기존공장 증설(3천 m ² 이내)	1천 m ² 이내 현지근린·첨단업종·건축자재업종 신·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좌동
	도시형공장 증설	x			1천 m ² 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x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	1천 m ² 이내			3천 m ² 이내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	x
	기존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x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x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좌동			폐업공장 양수 동일규모 공장 신설	x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93.7.1 당시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존공장 증설 허가 가능

- 성장관리권역 :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 범위 증설이고 증설면적이 3천 m² 넘지 않을 것

- 자연보전권역 : 성장관리권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비(非)배출 공장으로 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이하이고, 증설면적 1천 m² 넘지 않을 것

6

중소·중견기업연구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현황)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시설물로 각종 바닥면적 합이 1천m²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과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연도별 단위부담금>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3천m ² 이하	350원						
3천m ² 초과 ~ 3만m ²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m ²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시설물 교통유발계수>

	100만명 이상	50만 이상~100만명 미만	30만 이상~50만명 미만	10만 이상~30만명 미만
연구소	0.90	0.82	0.74	0.74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 (문제점) 기업연구소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기업연구소는 부담금 부과
- (전의안) 중소·중견기업연구소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교통유발계수를 공장시설로 적용하여 부담완화

7

중소·중견기업연구소 설립시 과밀부담금 면제

- (현황)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기업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과밀부담금 부과
- (문제점)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 가중
 -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약 72%가 R&D 전문인력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에 기업연구소 설립 필요
- (건의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연구소 제외

V.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조성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 (현황)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이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65%에 이르고 있음

과세표준	상속세 및 증여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문제점) 한국의 가업승계 관련 세금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추진 중(대한민국강소기업포럼, '11년)

* 폐지국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등

* 감면국가 :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 가업승계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유지 및 방어가 어려움

- (건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2

기업승계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 황)** 기업승계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10~30% 할증 평가
 - *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50% 초과할 경우 30%(중소 15%) 할증평가하고 50% 이하일 경우 20%(중소 10%) 할증평가(중소 '17년 말까지 할증평가 배제)
- (문제점)** 중견기업의 기업승계시 할증평가로 실효세율이 최대 65%에 이르고 있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승계를 하더라도 세금납부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유지 및 방어가 어려움
 - 또한, 비상장기업 주식·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과대평가된 주식에 할증평가까지 적용함에 따라 이중 할증 문제 발생
- (전의안)** 기업승계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3

고용유지 의무조건 완화

- (현 황)**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80% 이상 고용(정규직 근로자)을 유지하고, 상속개시년도부터 10년간 12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문제점)** 가업승계 후 10년간 120%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고용유지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유연성 저해
 -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엄격한 고용유지 의무조건 부과
 - * (일본) 가업승계 후 5년 간 상시 종업원 수의 80% 이상 고용유지
 - * (독일) 고용유지 조건은 없으나 가업승계 후 5년간 사업을 계속하고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보다 400% 이상일 경우 85%를 공제, 7년간 사업을 계속하고 급여총액이 700% 이상일 경우 100% 공제
- (건의안)** 고용유지 의무조건을 완화하거나 독일처럼 급여총액 유지 조건으로 변경

4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시 공제한도 확대

- (현 황)**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100억원 한도에서 공제
 - * 가업승계 공제한도 : (상속) 500억원, (증여) 100억원
- (문제점)** 사전증여나 사후상속이나 가업승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
 - 독일, 일본 등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과 증여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가업증여공제율 : 일본(80%), 독일(85% or 100%)
 - * 공제한도 : 일본(승계기업주식의 2/3), 독일(85% : 한도 없음, 100% : 2,6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 75만 유로당 1%씩 공제율 감소)
- (전의안)** 생전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5

공익법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 (현 황)**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비과세 주식보유한도를 5%(성실공익법인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 * 성실공익법인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법인
- (문제점)** 공익법인을 가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비과세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고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시 임원 구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와 경영권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
 - * 상속인의 이사 취임은 현원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공익법인의 비과세 주식보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 주식보유한도 제한 : 미국·캐나다 20%, 일본 50%, 영국·호주·대만 제한 없음
- (전의안)** 공익법인의 비과세 주식보유한도 제한을 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제도 개선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도입

- (현 황)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명문장수기업, 승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추진 중
- (문제점) 가업승계 후 지분율 하락으로 인해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시 경영권 방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업종전문기업 A사는 3대 승계를 거치면서 지분율이 하락하였는데, 적대적 M&A 위협을 받아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음
- 장수기업이 경영권 분쟁시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도입 필요
 -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황금주, 복수의결권, 초다수의결권, 테뉴어 보팅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 (건의안) 가업승계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테뉴어 보팅 도입

VI. 공정거래질서 확립

1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현황)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국토부는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마련하여 4대 공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중
-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계약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강요하여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빈발

※ 불공정 계약 관행 사례

- (설계변경시 계약금 부당조정)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시 상호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나 계약특수조건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금액을 조정
- (권리 제한)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제한, 소송 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 (잦은 계약 조건 및 과업범위 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 입찰 참여 규정으로 협박해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

- (견의안)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4대 공기업 이외 발전회사·지자체 등에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확대하고, 국가·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된 특수조건, 내부지침 운영 개선

2

발주기관 귀책시 공사기간연장 추가비용 지급

- (현 황)** 건설현장 특성상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예산부족, 보상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빈번히 발생
- (문제점)**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 * 전체 공사금액 중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2% 내외(대한건설협회)
 - 이에 따라 시공사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 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 분쟁사례 :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1~4공구, 5~6공구, 오리-수원 복선전철구간 6공구, 굴포천 방수로, 거금도 연도교, 전라선 전차선로 소송 등
- (견의안)**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발주기관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

3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 (현황) 건설하도급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각각 중복규제
 - 「하도급법」은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을 적용대상으로 기업규모의 차이가 있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만 적용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 적용
- (문제점) 종합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건설업체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라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음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대금 지급보증, 위반시 처벌 등 하도급 관련 기준이 중복되거나 상이하여 기업의 혼란 가중
- (견의안)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4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참여제한 합리화

- (현황) 불공정 거래, 담합, 부정 하도급 등 21개 사유를 위반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1개월~2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 금지
- (문제점) 입찰담합·뇌물공여 등의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4~5개의 중복제재 부과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사례>

관련 법률	제재 유형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2조	매출액 10% 미만 과징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3호	등록말소 처분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3	신인도 감점(-3점 이하)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

- 중복제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처벌로 특히, 건설업처럼 공공계약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금지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가혹한 처벌
- 현행 제도는 획일적으로 해당 기업에 전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중복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 위헌소지가 있음
- (견의안) 국가·지방계약 관련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범위를 당해 발주기관으로 한정하고 중복처벌 완화

5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기업 세제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 황)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의 0.1% 또는 0.2% 세액공제('17년 말까지)

*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위험 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

- (문제점) 상생결제제도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2차 이하 중소기업의 거래안정화, 금융비용절감, 연쇄부도 방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도 총발행액 기준 91조 2,576억원 중 구매기업과 1차 발행액이 90조 744억원이며, 1차 이하 발행액은 660억원에 불과
- 상생결제제도 활용시 환출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은 자금유동성이 저하되고 세제지원도 받을 수 없어 제도 활용의 유인이 별로 없음
-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제도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의안)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VII.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

사외이사 선임 자율화

- (현황)** 상장회사는 1/4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 예외 : 코스닥 상장법인 중 자산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 신규상장사(최초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 (문제점)** 사외이사가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음에도 사외이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음
 - 사외이사는 본업(本業)을 가지고 있어 회사 제반사항을 알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잘못된 의사결정시 소송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대규모 투자나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
- (견의안)** 사외이사 선임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

2

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행사제한 폐지

- (현황)**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 * 3% 초과보유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그 초과 주식에 대해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주식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식을 3% 초과 보유주주는 초과 주식에 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 (문제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
 - 주식을 3% 초과 보유한 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미국, 일본 등은 감사위원 자격 제한이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 (견의안)** 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3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현 황)**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려면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함
(특별결의 : 출석주주 의결권 2/3, 발행주식 1/3 이상)
- (문제점)**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주들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서면투표('99년 도입), 전자투표('09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
 - * 실제로 전자투표는 '16년 487개사가 이용했으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으로 1.44%, 주주 수 기준으로 0.22%에 불과(예탁결제원)
 - '17년 말 새도우보팅* 폐지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주총회 결의요건 미충족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
 - * 舊 증권거래법은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지는 상장회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새도우보팅)를 운영했으며, '14.12월 폐지 예정이었으나 폐지시 주주총회 결의 불성립 등의 문제를 감안해 3년간 유예
- (건의안)** 새도우보팅 폐지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 * (예시) 보통결의 :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구 분	의사정 족수	의결정 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한 국	X	O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 국 (RMBCA)	X	X	출석과반수	정관자치
일 본	△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정관제 가능*)	출석 2/3 (정관으로 1/3 조정 가능)
영 국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3/4
독 일	X	X	출석과반수	출석 3/4
프랑스	O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캐나다	O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66.6%
호 주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중 국	X	X	출석과반수	출석 2/3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수 기준

* 임원 선·해임의 경우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완전배제 불가

* 자료 :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증권기업연합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17.2월

4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 (현 황)**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 했으나, 자기주식 취득한도 폐지 외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방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강화함
 - *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폐지 등 적대적 M&A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문제점)**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되지 않아 상장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어 막대한 경영권 방어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 상장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은 86%이며, 대기업은 14%에 불과(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발표, ’17.2.17)
 - 적대적 M&A는 무능한 경영진 축출로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영진의 전략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도 적대적 M&A의 역기능을 인식하고 황금주,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 (건의안)**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신고 중복규제 완화

- (현 황)** 주권상장법인은 소유주식 변동 현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문제점)** 주권상장법인의 소유주식 변동 현황 신고 의무는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중복규제
 - *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시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 자본시장법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증권 등의 소유상황 변동시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 주권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시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적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건의안)**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조항 삭제

VIII 국민 부담 완화

1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를 통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인허가 규제*는 독과점 보호, 시장경쟁 제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및 후생 악화, 통신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

- * 이동통신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 진입규제는 시장을 3사 독과점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여 요금경쟁 유인을 감소시키고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
 - * 1위 사업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12년 13.6%→'13년 15.3%→'14년 13.4%→'15년 13.2%→'16년 2Q 14.7%(미래창조과학부, '16년)
- 역대 정부에서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폰 정책 등을 추진했으나 통신비 부담은 월평균 14.4만원으로 높은 수준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및 통신비 현황>

(단위 : 천원, %)

	2003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가율*
소비 지출	2,101	2,173	2,287	2,301	2,312	2,304	2,340	2,563	2,550	21.37
통신비 (비중)	114 (5.44)	124 (5.70)	139 (6.06)	145 (6.31)	159 (6.87)	160 (6.92)	157 (6.71)	148 (5.77)	144 (5.64)	26.32

* 증가율 : 2003년 대비 2016년 소비지출과 통신비의 증가율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ICT산업 발전,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확산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참여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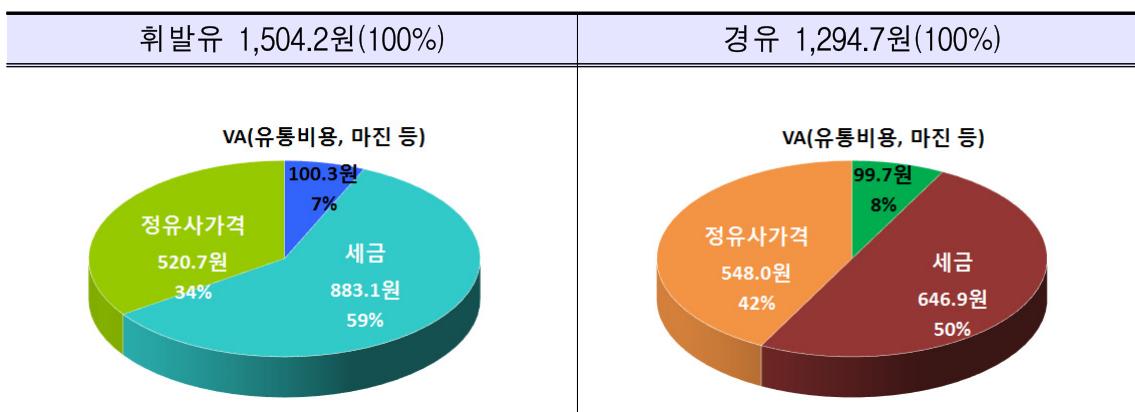
- (건의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 허용 및 신규 사업자 참여확대로 통신료 부담 완화 및 산업 활성화 도모

2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 (현황)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중
- (문제점) 유류세가 가격의 50% 이상(휘발유 59%, 경유 50%)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17년 3월 4주 유류 소비자 가격 구성>



- 특히, 경유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견의안)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유류세 인하

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와 환자 간에는 불허

* 원격진료 :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화상통신, 인터넷 등 ICT를 이용해 진료하는 의료 형태

-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2.2명, '14년)는 OECD 최하위이며, 도시에 의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의료사각지대 발생
-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지역이 제한되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고, ICT기술과 의료를 융합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저해
 - * U-헬스 : 유비쿼터스와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로 시공간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 제공
-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의료취약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사용하고, U-헬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건의안)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확대와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4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폐지

 (현 황) 조세 외 부담금 수는 감소 추세이나, 부담금 규모는 급증

- '15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9조 1,0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인 1조 9,279억 원 증가

<부담금 수 및 부담금 징수액>

(단위 : 개, 조원)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담금 수	101	102	94	97	97	96	95	94
부담금 징수액	7.1	11.4	14.5	14.8	15.7	16.4	17.2	19.1

* 부담금은 60년대 7개, 70년대 14개, 80년대 34개, 90년대 95개로 급증

* 자료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 년도

- 부담금 수는 환경부 23개,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순이었으나, 징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약 5.1조원, 금융위원회 약 3.6조원, 환경부 약 2.8조원 순으로 나타남

<소관부처별 2015년 부담금 수 및 징수금액>

순위	소관부처	부담금 수	금액(비중)	순위	소관부처	부담금 수	금액(비중)	
1	산업통상자원부	9	51,278	26.8	10	미래창조과학부	2	3,751
2	금융위원회	8	36,494	19.1	11	중소기업청	1	2,423
3	환경부	23	27,649	14.5	12	기획재정부	2	1,930
4	보건복지부	1	24,757	13.0	13	산림청	2	1,195
5	농림축산식품부	7	12,726	6.7	14	외교부	2	748
6	국토교통부	17	8,128	4.3	15	원자력안전위원회	1	674
7	고용노동부	2	7,791	4.1	16	해양수산부	7	500
8	문화체육관광부	7	6,278	3.3	17	행정자치부	1	156
9	교육부	1	4,574	2.4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	25

합계(94개) : 191,076(100%)

*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6.5월

(문제점) 과중한 준조세 부담은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의 투자의욕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

-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09년 1.2조원에서 '15년 1.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기금·청년희망펀드 등을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

<준조세 부담 추이>

(단위 : 억원, %)

	사회보험료 제외 준조세	법인세	법인세대비 준조세비율	GDP대비 준조세비율	사회보험료 포함 준조세
2009	117,466	352,514	33.3	1.02	383,004
2012	131,348	459,318	28.6	0.95	
2013	140,322	438,548	32.0	0.98	
2014	146,174	426,503	34.3	0.98	
2015	164,071	450,295	36.4	1.05	599,071

* 자료 : 심재철 국회부의장실·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주최세미나, 「기업 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2.6

- 조세 및 다른 부담금과 중복 부과하거나 부과기준·부과원칙이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금 징수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침해

(건의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등의 준조세 폐지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제안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